

「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11월 2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11월 2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제9조제3항 및 부칙<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>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. 12. 31.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명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(안 제6조)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. 12. 31.까지로 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제9조 및 부칙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므로,
- 계속적으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기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6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(준속기한) 특별회계의 준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
<u>제6조 (생 략)</u>	<u>제7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</u>